

거주사실 확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4일
수분양자 (거주의무자)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연락처	(주택) (휴대전화)
공공주택 사업자	상호명	소재지	
주택의 표시	(아파트) (동) (호)		
	주택 소재지(주소)		
	전용면적 (㎡)	입주자모집 공고일	
	계약체결일 년 월 일	년 월 일	
	거주의무기간: (년)	최초 입주가능일	
	거주의무기간 종료일 년 월 일	년 월 일	
	거주의무 예외 해당 여부	[]해당 없음 []해당	
		거주의무 예외 확인일: 년 월 일	
		거주의무 예외 인정기간: 년 개월	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의5제11항(같은 법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거주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공공주택사업자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-
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➔	접 수	➔	검 토	➔	기안·결재	➔	통보
처리기관: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								